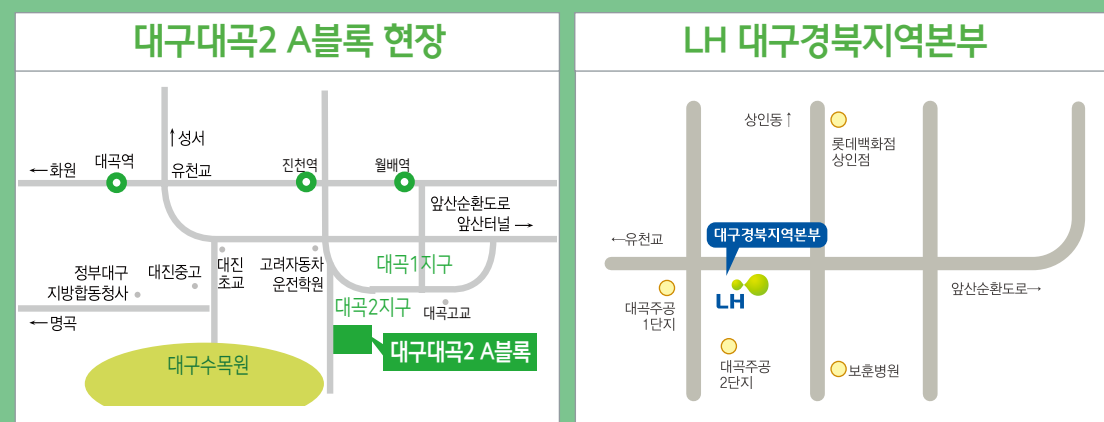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문의 : 1600-1004

대구대곡2 A블록 국민임대주택

28㎡ 308세대 / 46㎡ 94세대 총 402세대

수목원과 청룡산 사이에 자리 잡은 대구대곡2지구,
청룡산의 푸르름과 수목원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
LH가 살기 좋은 집을 짓습니다.



대구수목원과 청룡산 사이! 자연 속, 심표를 찾다!

수목원과 청룡산 사이에 자리 잡은 대구대곡2지구,
청룡산의 푸르름과 수목원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 LH가 살기 좋은 집을 짓습니다.
이사걱정 없이 새집에서 내 집처럼 살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꿈을 꿀 수 있는 곳!



대구대곡2 A블록 국민임대주택

D A E G U D A E G O G 2



CONTENTS

- | | | |
|----------------|--------------------|--------------|
| 04_ 지역조감도, 지역도 | 06_ 단지조감도, 토지이용계획도 | 08_ 평면설계 |
| 14_ 단지배치도 | 15_ 동호배치도 | 16_ 마감재내역 |
| | | 18_ 입주자모집공고문 |



LH는 토지·주택분야 대표기업으로서의 의미를 함축하며, L과 H의 이니셜은 Land & Housing, Life & Human, Love & Happiness 등 인간중심과 국민행복을 위한 주거공간 및 도시·국토개발의 고객가치를 담았습니다.

• 지역조감도, 교통망도 / 단지설계 / 평면설계 /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 마감재 내역

Best
Location
지역조감도



도시로 출근하고 자연으로 퇴근하는 자리!

山 · 水 · 花 가 조화를 이루는 자리에 도시의 편리함을 담다!



대구대곡2 A블록



빠르고 편리한 교통

지구 앞 상화로 등 다양한 도로망과 대구1호선을 통한 도심 등 주요지역 이동이 편리하고 화원옥포IC가 인접해 있어 광역교통망 접근 용이



풍부한 생활 인프라

지구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예정되어 있고 상업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과 인근의 롯데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이용편리



쾌적한 자연환경

지구 내 대규모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대구수목원과 청룡산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



대구1호선(진천역)



대구수목원

• 지역조감도, 교통망도 / **단지설계** / 평면설계 / 단지배치도, 동호배치도 / 마감재 내역

Dream
Landscape
단지조감도



근린공원, 상업시설이 가까운 대구대곡2 **제일 앞자리**
공원도 생활편의시설도 집 앞에 두고 산다!



국민임대	103, 104, 105
행복주택	101, 102



금회공급
(국민임대, 402세대)

* 행복주택 408세대는 '18년 공급(예정)

공공주택용지	유치원
상업용지	자족시설
준주거용지	사회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근린공원
단독주택용지	공공공지
교육시설	연결녹지
주유소	저류시설
종교시설	



주부를 행복하게 하는 보육환경

단지 내에 유아와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터와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안전한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까지 갖추어 집니다.



건강과 여가를 위한 커뮤니티

주민운동시설에서 언제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하여 이웃과 소통하며 즐거운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 상기 단지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비실, 옥외쓰레기보관함, 자전거보관소, 환기구, 채광창 등의 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Unit Plan

28_A

28.13㎡ / 276세대

호당 계약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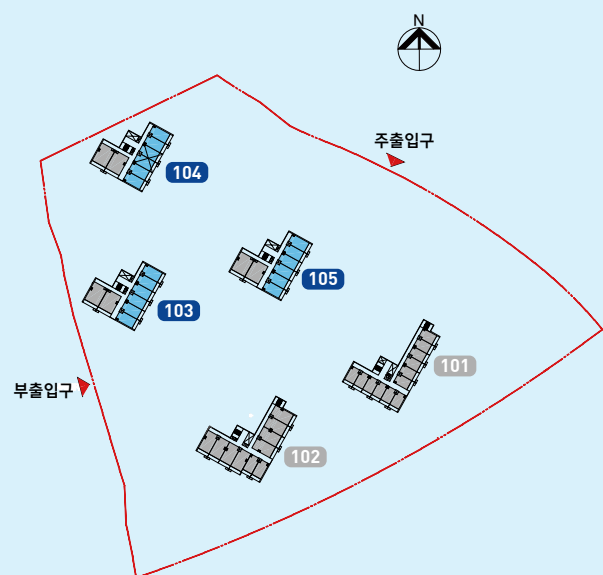
주 거 전 용	28,130㎡
주 거 공 용	16,391㎡
기 타 공 용	2,459㎡
지 하 주 차 장	14,408㎡
합 계	61,381㎡

발코니 면적

발 코 니	5.67㎡
-------	-------

실별면적

거 실 / 침 실	15.99㎡
주 방 / 식 당	7.14㎡
욕 실	2.98㎡
현 관	2.02㎡
합 계	28.13㎡



실용적인 공간 구성으로
행복을 디자인합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세대현관문은 승강기실을 기준으로 개폐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Unit Plan

28_B

(주거약자)

28.23㎡ / 32세대

호당 계약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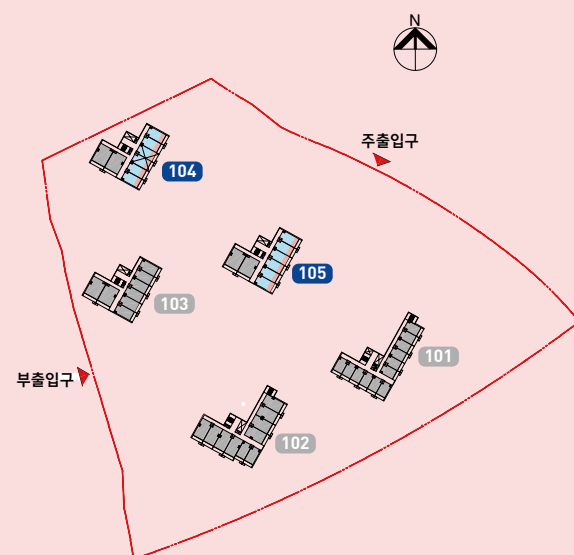
주 거 전 용	28.2300㎡
주 거 공 용	16.4495㎡
기 타 공 용	2.4680㎡
지 하 주 차 장	14.4520㎡
합 계	61.5995㎡

발코니면적

발코니	5.67㎡
-----	-------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5.99㎡
주방 / 식당	7.14㎡
욕실	3.08㎡
현관	2.02㎡
합 계	28.23㎡



숨어있는 공간까지
세심함으로 채웁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세대현관문은 승강기실을 기준으로 개폐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Unit Plan

46_A

46.06㎡ / 94세대

호당 계약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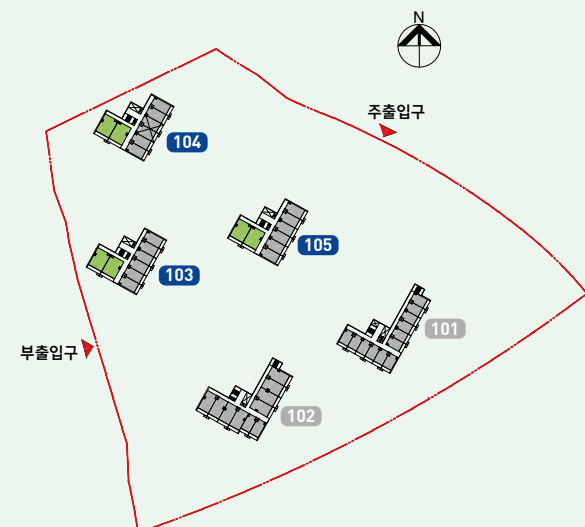
주 거 전 용	46.0600㎡
주 거 공 용	26.8390㎡
기 타 공 용	4.0269㎡
지 하 주 차 장	23.5798㎡
합 계	100.5057㎡

발코니 면적

발 코 니	8.63㎡
-------	-------

실 별 면 적

거 실	9.48㎡
침 실 1	9.18㎡
침 실 2	7.29㎡
주 방 / 식 당	14.99㎡
욕 실	3.08㎡
현 관	2.04㎡
합 계	4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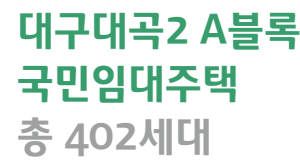


자연을 향해 열린 창으로
행복을 초대합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투시도, CG,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될 수 있으며 평면도상 치수는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으며 실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면적은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산식: ㎡×0.3025=평)
 ※ 세대현관문은 승강기실을 기준으로 개폐방향에 다를 수 있습니다.

동호배치도 / Block & Unit Chart



국민임대주택 (총 402세대)			행복주택	계
28A 276세대	28B (주거약자용) 32세대	46A 94세대	21A, 25A, 36A 408세대	810세대

※ 상기 단지배치도는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옥외쓰레기보관함,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옥외계단 등이 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마감재 내역

공종별	적용부문		시설내역	비고
건 축	계단실 홀 복도	바닥	[계단실] 1층 : 테라조타일, 2층이상 : 테라조타일 [외부비상계단실] : 모르타르마감 [홀] 1층 : 화강석, 2층이상 : 테라조타일 [복도] : 테라조타일	
		벽	[계단실] 1층 : 다채무늬도료, 2층이상 : 다채무늬도료 [외부비상계단실] : 외부수성페인트 [홀] 1층 : 다채무늬도료, 2층이상 : 다채무늬도료 [복도] 상부 : 외부수성페인트, 하부 : 낙서방지용페인트	
		천정	[계단실] 1층 : 다채무늬도료, 2층이상 : 다채무늬도료 [외부비상계단실] : 외부수성페인트 [홀] 1층 : 칼라알루미늄천장판, 2층이상 : 다채무늬도료 [복도] : 외부수성페인트, 칼라알루미늄천장판	
	현관	바닥	자기질시유타일	
		벽	실크 도배지	
		천정	발포 도배지	
	발코니	바닥	자기질시유타일	
		벽	탄성도료	
		천정	탄성도료	
	거실 (거실겸 침실)	바닥	룸카펫(2.0)	
		벽	실크 도배지	
		천정	발포 도배지	
	침실	바닥	룸카펫(2.0)	
		벽	실크 도배지	
		천정	발포 도배지	
	주방	바닥	룸카펫(2.0)	
		벽	실크 도배지+도기질시유타일	
		천정	발포 도배지	
	욕실 (습식욕실/ 조립실욕실)	바닥	습식:자기질타일, 조립식욕실:자기질타일	
		벽	습식:도기질타일, 조립식욕실:도기질타일	
		천정	습식:PVC천정판, 조립식욕실:SMC	
	주방가구	문짝/체대	HPM/LPM	
		상판	인조대리석(BMC)	
	내부창호		래핑문틀/ABS문짝	
	발코니창		합성수지창틀/합성수지창짝	
기 계	보일러		지역난방	
	렌지후드		일반형(디렉스형)	
	수전		니켈크롬도장	
전 기 통 신	조명기구		일반형	
	배선기구		일반형	
	비디오폰		7인치 칼라LCD	

.....

대구대곡2 A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대구대곡2 A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상기 임대주택은 인터넷 PC로만 청약접수가 가능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현장접수 가능하며, 우선공급 대상자 중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등 기관추천 대상자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현장접수 : LH 대구본부 2층**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국민임대 신청 안내

청약순위(가입)확인서 발급번호 : 2017001389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절차

순위별 청약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17.10.18(수)~19(목)

'17.10.25(수)

'17.10.31(화)~11.01(수)

'17.11.02(목)~12.18(월)

'17.12.19(화)

'17.12..27(수)~28(목)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 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1 건설위치 :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510번지 일원, 대구대곡2지구 A블록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밖에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			
			기타공용	주차장								
28A	28.13	16.3912	2.4593	14.4008	61.3813	276	220	56	－	103, 104, 105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19년 03월
28B	28.23	16.4495	2.4680	14.4520	61.5995	32	－	－	32	104, 105		
46A	46.06	26.8390	4.0269	23.5798	100.5057	94	94	－	－	103, 104, 105		

공급형별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전환 임대조건(예시)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28A 28B	11,287	2,260	9,027	152,000	(+) 18,000	29,287	62,000
					(-) 7,000	4,287	175,330
46A	31,718	6,350	25,368	265,000	(+) 29,000	60,718	120,000
					(-) 23,000	8,718	341,660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여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위 공급호수 중 우선공급호수는 신청자가 공급호수에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 호수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대구대곡2 A블록은 국민임대주택(402세대, '17.09월 공급)과 행복주택(408세대, '18년 공급(예정)) 혼합단지로, 단지 주변 환경·단지 배치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용 면적(시설) 중 일부는 입주민 외 일반인에게 개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장,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은 향후 재설치 불가하오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시기 바라며, 저층세대는 동시설로 인해 약취 또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팸플렛 단지배치도 참고)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가 2주택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됨에 유의
 -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8B)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기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인상)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9.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청약자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으로 추가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단,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폭력피해자, 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등록포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을 제외합니다.
-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 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또는 국내 거소신고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태아,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등재, 분리배우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 배우자가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상태인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 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 이하 가구	3,419,110원 이하	
		4인, 5인 가구	3,941,190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6인 가구	4,166,860원 이하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7인 가구	4,416,110원 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8인 가구	4,665,360원 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무리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무리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 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사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임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급일정 및 장소

■ 공급일정 및 장소

주택유형	신청자격자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8번 참고)
28A 28B 46A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	‘17.10.18(수) ~ 19(목) * 인터넷신청은 신청첫날 오전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 * 현장신청은 접수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7.10.25(수) 오후 5시	‘17.10.31(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17.12.19(화) 오후 5시	‘17.12.27(수) ~ 28(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 소		- 인터넷 : LH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 현장 : LH 대구본부 2층	LH 홈페이지	LH 대구본부 2층	LH 홈페이지	온라인 or LH 대구본부 2층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나, 만 65세 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과 기관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현장접수 함
 - * 현장접수장소 주소(LH 대구본부)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번지)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 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만 경쟁하게 됩니다.
- LH 홈페이지 당첨자(서류제출대상자포함), 공지사항 화면 찾기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제출서류(7번 참고)를 모두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LH 대구본부 2층)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공인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신청접수 첫날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대구대곡2 A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2017001389

구 분	조 회 방 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 (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주택청약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 (www.ap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 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 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 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17.10.25(수), 오후 5시)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화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17.10.31(화) ~ 11.01(수),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에 지정 장소(LH 대구본부 2층)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6

입주자선정

※ 일반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배정호수

공급 형태	일반 공급	주거 약자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가목	나목																	
					사업 지구 철거민 등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파독 군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족	비정 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28A	56	—	220	28	9	3	12	3	3	3	3	6	9	6	9	28	9	6	83			
28B		32	—	—	—	—	—	—	—	—	—	—	—	—	—	—	—	—	—			
46A	—	—	94	9	2	4	3	1	1	1	1	1	2	1	28	9	2	1	28			

- 우선공급 신청자가 우선공급 배정호수에 미달할 때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기관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 공사로 통보된 명단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주거약자 주택공급

구분

입주자선정 방법

일반공급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 수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2,442,220원 이하	3,419,110원 이하
4인, 5인	2,815,130원 이하	3,941,190원 이하
6인	2,976,330원 이하	4,166,860원 이하
7인	3,154,370원 이하	4,416,110원 이하
8인	3,332,400원 이하	4,665,360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달성군, 남구, 중구, 서구, 경북 고령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일반공급, 주거약자)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일반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주거약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 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 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아래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을 모집하지 않거나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 신청접수가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접수보다 선순위(전용 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에서 마감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로 전환을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되고 다만,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1952년 8월 23일 이전 출생) ⑩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 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⑱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7, 8, 11, 12, 16, 17호의 신청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3자녀 이상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 의료급이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 행정자치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일반공급 등과는 다른 별도의 순위 등이 적용됩니다.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 혼인기간이 5년 이내 이고, ②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해서 자녀(「민법」에 따르는 미성년자에 한정)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의 거주자 ② 미성년자녀 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자녀 모두 포함 ③ 미성년자녀 수(태아 포함)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신혼부부 제외)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장애등급 높은자 → 배점합산	
신혼부부 우선공급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순위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대구시)의 거주자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③ 자녀 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	－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대구시 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 수(만 19세미만, 태아 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 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자원대상 한부모가 5. 북한이탈주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구 분		3점	2점	1점
⑨ 사회취약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위 1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7.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8. 1번에서 4번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중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 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제외

※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미혼의 손자녀 포함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 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대구시 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사업지구 철거민 등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7 신청서류 (2017년 9월 29일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1통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일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실,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대구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 수, 신혼부부·3자녀 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 수·미성년자녀 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여 처리 중인 경우 : 외국인 등록 신청 접수증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증독,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통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현장접수자에 한함)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2you.com)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주택관리번호 : 대구대곡 A블록 국민임대주택 2017001389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우선공급 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체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체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할 경우 3년 이상)인 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함	시·군·구청
	⑮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임양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임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⑱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⑲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⑳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㉑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 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주민센터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⑥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외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 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기업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인 경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 18 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세대주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주민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차.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차목 해당자] 확인서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계,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민센터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통장 1면 사본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17.12.19(화), 오후 5시, LH 홈페이지)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형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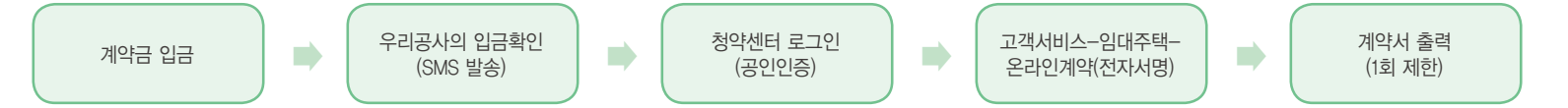
■ 계약안내(개별통보)

● 온라인 계약 (계약기간 : 2017.12.27(수) 10:00 ~ 28(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하셨더라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 출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반드시 프린터 테스트 후 출력하여야 하며, 계약서 인쇄버튼클릭 후 개인 프린터상태 및 네트워크 사정으로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도 1회 출력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17.12.27(수)~ 28(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장소 : LH대구본부 2층)

- 현장 계약을 원하는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장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본),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용 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 5% 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th>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tr><tr><td>10% 이하</td><td>100%</td><td>110%</td></tr><tr><td>10% 초과 30% 이하</td><td>110%</td><td>120%</td></tr><tr><td>30% 초과 50% 이하</td><td>120%</td><td>140%</td></tr><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d colspan="2">140%</td></tr><tr><td colspan="3">*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td></tr></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 이하	100%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50% 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 이하	100%	110%																					
10% 초과 30% 이하	110%	120%																					
30% 초과 50% 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임대대상 및 조건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 이혼, 혼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할일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신청서류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 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에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남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 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N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대구대곡2 A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한일건설(주) 등	건설공제조합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514-82-12296)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 ·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지체 · 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수건걸이 1.0 ～ 1.2m 높이에 설치	3급 이상의 지체 · 뇌병변장애인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 ·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보호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 이상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 5 · 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되어 산정됨.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사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회복지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임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임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기타자산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임대공급운영부

임대문의

당첨자 ARS

인터넷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지역본부(콜센터) 053-603-2936, 2935

1661-7700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https://apply.lh.or.kr)

현장접수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현장계약체결

상인동 ↑
롯데백화점 상인점
←유천교
대곡주공 1단지
LH
대곡주공 2단지
보훈병원
→앞산순환도로→

(도로명주소)

·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1445번지)

(오시는 방법)

· 지하철 1호선 상인역 4번출구
* 지하철 연계 버스 649번 (대곡주공1단지 하차)

2017. 09. 29

34 | 35